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1225 |
|----------|-------|

발의연월일 : 2025. 7. 2.

발 의 자 : 김희정 · 서지영 · 김기현  
서명옥 · 박준태 · 김도읍  
안상훈 · 김소희 · 최수진  
박수영 · 최형두 · 권영진  
강선영 · 주진우 · 곽규택  
서일준 · 배준영 · 서범수  
이종배 · 김은혜 · 박수민  
박충권 · 김석기 · 최보운  
김형동 의원(2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공직후보자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도록 선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직후보자 등은 인사청문과 관련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요구가 있을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선서 후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재산 등 관련 자료를 거부 또는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에 허위진술 시 벌을 받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관련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직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제16조제1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있다”를 “없다”로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답변”을 “선서·답변”으로 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

다.

제16조의3(고발) ① 위원회는 공직후보자가 제16조의2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발은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2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종료되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가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발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증 등의 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동의안등이 국회에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7조(위원의 질의등)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 후보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p> <p><u>“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u></p> <p>③ ~ ⑦ (생략)</p> <p>제16조(답변등의 거부) ① 공직후보자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u>경우에는</u>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p> <p>② 공직후보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u>답변</u>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p> | <p>제7조(위원의 질의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 후보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p> <p><u>“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u></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p>제16조(답변등의 거부) ① -----<br/>-----<br/>-----<br/>-----<u>경우를 제외하고는</u>-----<br/><u>없다.</u></p> <p>② -----<br/>-----<br/>-----<u>선서·답변</u>-----<br/>-----<br/>-----.</p> |

<신 설>

제16조의2(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범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3(고발) ① 위원회는 공직후보자가 제16조의2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발은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2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종료

되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  
한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가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발  
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